

Yeosu Web Contents

2023년 11월 29일 12시 10분



목차

목차	2
창업의 범위	3
창업의 범위	3
중소기업 창업지원시책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창업	3
중소기업창업지원대상 업종	3
사례별 창업 인정여부	3

창업의 범위	설립절차	공장설립안내	벤처정보 ㅈ
--------	------	--------	--------

창업의 범위

중소기업 창업지원시책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창업

중소기업 창업지원시책의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창설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로서,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범위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.

-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란 상시근로자 및 자산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범위내이며, 실질적인 독립성이 있는 기업
-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해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(www.smba.go.kr)의 중소기업 범위해석 부문을 참조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원시적(☒☒☒)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

중소기업창업지원대상 업종

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(법 제3조, 시행령 제4조)은 아래와 같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을 창업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

- 금융 및 보험업, 부동산업, 숙박 및 음식점업(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), 무도장운영업,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, 기타 gambling 및 betting업, 기타개인서비스업(산업용 세탁업은 제외한다),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
사례별 창업 인정여부

주체	사업장소		사례	창업여부
α개인	갑장소에 서	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하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	조직변경 ★창업★
		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않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	형태변경 ★창업★
α법인	갑장소에 서	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하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	위장창업 ★창업★
		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않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	형태변경 ★창업★
α개인	을장소에 서	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하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	법인전환 ★창업★
		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	★창업★

		없고	▪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	★창업★
a법인이	을장소에 서	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하고	▪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▪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	사업승계 ★창업★
		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않고	▪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▪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	★창업★ ★창업★
a가 (개인)	을장소에 서	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하고	▪ 다시 a명으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▪ 다시 a명으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	사업이전 ★창업★
		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 않고	▪ 다시 a명으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▪ 다시 a명으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	사업확장업종추가

주)

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(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중 앞에서 4자리까지 일치하면 "동종업종"에 해당)

2 "갑" 장소는 기존의 사업장, "을" 장소는 신규의 사업장 (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(담, 출입문, 도로 등)를 두고 있어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신규사업장에 해당)

3 "A명의"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

[창업정보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](#)

Yeosu Web Contents

